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48 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 : 양이원영·장철민·송옥주

안호영 · 우원식 · 이용빈

이수진비 · 이탄희 · 도종환

유정주 • 윤미향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 따라 새활용(업사이클) 등 녹색신산업의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 정책추진과 지속적 재정확보가 어려움.

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산업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환경산업 정의를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으로 개정함(안 제2조제3호).

법률 제 호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라목(종전의 나목) 중 "보전·관리를"을 "보전·관리·개선을"로, "시설·재료 또는"을 "재화 및"으로 한다.

"환경산업"이란 대기, 수질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, 기술의 개발·적용을 하는 다음 각 목의산업을 말한다.

- 가. 환경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피해의 측정·예방·최소화·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, 소재·부품·장비,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- 나.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(이하 "새활용"이라 한다)하는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 보전 · 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다.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했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2. (생략)
- 3. "환경산업"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「환경분야 시험・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・제작・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산업을 말한다.
 - 가. 대기, 수질, 소음・진동, 생

 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

 측정・예방・최소화・복구

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

 시설・재료 또는 서비스를

 제공하는 산업

<신 설>

개 정 안

제2조(정의) -----

-----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"환경산업"이란 대기, 수질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, 기술의 개발·적용을 하는 다음 각목의 산업을 말한다.
 - 가. 환경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

 피해의 측정・예방・최소화

 ・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, 소

 재・부품・장비, 제품 및 서

 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 - 나.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 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(이하 "새활용" 이라 한다)하는 등 자원을 순 환시켜 환경 보전·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
<신 설>

<u>나</u>. 그 밖에 환경의 <u>보전 · 관리</u> 를 위하여 필요한 <u>시설 · 재</u> <u>료 또는</u>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

4. ~ 7. (생 략)

1	가. 환경기	술에	관한	서비	스를
	제공하는	는 산약	h 브		
<u>i</u>	<u> </u>		<u>F</u>	<u> 1</u> 전・	관리
	• 개선을	<u> </u>			재화
	민				
	_				
4.	~ 7. (현	행과 >	같음)		